

예산총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5,864,696	12,775,941
일반회계	384,938,978	11,548,169
특별회계	40,925,718	1,227,772
기타특별회계	40,925,718	1,227,77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89,200	332,676
수질개선특별회계	14,765,324	442,9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5,737	12,772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4,371,381	131,141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500,000	15,000
하수도특별회계	9,774,076	293,222

제 2 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00,000천원이고, 재난·재해예비비는 1,226,12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